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10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조경태·유용원·안상훈

김성원・김 건・정연욱

이인선 · 정성국 · 곽규택

김상욱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 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조종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조종면허 발급 요건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신체기준에 관한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만을 요건으로 할 뿐, 그 외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호우·대설·강풍 등과 관련된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바, 육상 기후현상에 대한 기상특보로 인하여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종사자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내수면과해수면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함(안 제7조의2 신설).
-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며,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 다.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라.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할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신설).
- 마.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바.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를 수상레저활동 구역에 따라 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와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로 구분하여 명시합(안 제22조제1호).

법률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한다"를 "범위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 상레저기구 조종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 기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불합격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을 "면허시험"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3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제4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제4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지정취소"를 "지정 방법·절차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로 한다.

-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 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적·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8.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를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취소"를 "지정 방법·절차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에 필요한 인적·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한다.
-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한 경우
-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어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

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정지 절차"을 "대행"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 운영한 경우
-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사항"을 "사항과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에 따른 죄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장부와 그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시설·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교육기관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

다.

- ④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 나.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태풍·풍랑·폭풍해일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제2호및 제3호"를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8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
대행기관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종면허) ① (생 략)	제5조(조종면허) ① (현행과 같
	음)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②
같이 <u>구분한다</u> .	<u>범위를 구분한다</u>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① 제5조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제12조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해
	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 기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8조(면허시험) ①・② (생 략)	제8조(면허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	③
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u>는</u>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생략)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해양 7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 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 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 부를 면제한다.

- 1. ~ 4. (생략)
- 5. <u>해양경찰청장</u>이 지정·고시 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 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 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 수한 사람
- 6. (생략)
- ② (생략)
-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삭 제>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 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적

			- <u>해당</u>	하거나	제72	<u> 준의2</u>
	에	따른	신체검	사에	불합기	<u> 역한</u> -
	4	(현행	과 같음	<u>)</u>		
제	9조	.(면허	시험의	면제)	1 -	
			 (현행과		-)	
	1.	4.	(연행과	1 乍豆	-)	
	5.	제103	스제1항	에 따	라 해	<u>양경</u>
	<u>さ</u>	<u> </u>				
		<u>단체</u>	<u>]</u>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장비·시설 등 기준을 갖추 어야 한다.
- ④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장비· 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 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 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 설>

<삭 제>

(5)	<u>면허시험</u> -		
		•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 경찰청장은 제9조에 따른 면허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면 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 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

<신 설>

-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u>지정</u>을 받은 경우
- 2. (생략)
- 3. <u>제9조제3항</u>에 따른 교육내용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신 설>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인적·장비·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u>것</u>
②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면
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지정받
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
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u>③</u>
<u>.</u>
1
<u>지정 또는 변경지정</u>
2. (현행과 같음)
3. <u>제1항제1호</u>
4. <u>제1항제2호</u>

5.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신 설>

<신 설>

<u><신</u>설>

-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생략)
 -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해양경찰청장</u>이 지정하는 기관 이나 단체(이하 "안전교육 위

- 지 아니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 는 보고한 경우
- 7.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3조(수상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 2 -----
-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 <u>청장</u>-----단체

<u>탁기관"이라 한다)</u>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 ·장비·시설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u>지</u>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u>지</u> 정취소 등) <신 설> 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

<신 설>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 _____.

<삭 제>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u>지</u>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 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 교육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에 필요한 인적·장비·시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안전 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 전교육 위탁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u>3</u>	 	 	 	

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생략)
- 3. <u>제13조제3항</u>에 따른 지정 기 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u>신</u>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u>지정</u>

1
<u>지정 또는 변경지정</u>
2. (현행과 같음)
3. <u>제1항</u>

-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위탁기 관을 운영한 경우
-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 는 보고한 경우
-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u>④</u> ------<u>지정</u>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u>제3항</u>에 따른 면 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방법 • 절차와	지정 • 변경지정,
<u>지정취소</u>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조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박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u>③</u>·<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5)</u>	 	제4형	<u>}</u>	

부렁으로 정한다.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 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 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 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1
<u>제18</u> 조의2	2제1항에	따라	해
양경찰청장			
<u>단체</u>			
<삭 제>			

<u>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u> <u>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u> 경우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정지 절차,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	(4)	(현	행과	같음	.)	
5						
				대	행	

제18조의2(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경찰 청장은 제18조에 따른 면허시 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장비·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 험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

- 을 받아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 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 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 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 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대행기관을운영한 경우
-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 는 보고한 경우

-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 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그 밖에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와 지정·변경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 면

제19조(<u>종사자</u> 교육) <u><신 설></u>

① (생략)

② <u>제1항</u>에 따른 교육의 시기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u>사</u>

<신 설>

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 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교 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에 따 른 죄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제2항-----<u>항</u>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항과 종사자의 준수사항</u>-----

제19조의2(지도 및 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 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 행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설ㆍ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장부와 그 밖의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시설·장비 및 기관의 운영 개선과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교육기 관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 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 저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데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	활
동의	제한)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u>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u>
 <u>・대설・강풍과 관련된</u> 주의
 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신 설>

<신 설>

2. (생략)

제56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차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1.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u>
가.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
<u>동</u> : 태풍·풍랑·폭풍해일
<u>•호우·대설·강풍</u>
나.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
동: 태풍·풍랑·폭풍해일
2. (현행과 같음)
제56조(과징금) ①

다.

-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2. 안전교육 위탁기관: <u>제14조</u> <u>제1항제2호 및 제3호</u>
- 3. 시험대행기관: <u>제18조제2항</u> 제3호 및 제4호
- ② ~ ④ (생 략)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19조제1항</u>을 위반하여 교 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2. ~ 11. (생략)
 - ② ~ ④ (생 략)

1제10조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2 <u>제14조</u>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3 <u>제18</u> 조의2제3
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1. <u>제19조제2항</u>
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